

## 보상계획 공고문

울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4-305호(2024.6.21.)로 도시관리계획(특수학교) 결정된 가칭 '제3공립특수학교' 학교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 및 통지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을 시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가칭. 제3공립특수학교 학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 울산광역시교육감
3. 사업기간: 2024. 6. 21. ~ 준공 시까지
4. 사업구간: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산39-24번지 일원
5. 편입 토지 현황: 「붙임」참조
6. 보상계획

가. 보상계획 열람(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

- 1) 열람기간: 2024. 8. 22. ~ 2024. 9. 5. (14일 이상)
- 2) 열람장소: 울산광역시교육청(6층) 교육여건개선과

나. 보상시기: 2024. 10월~ (정확한 시기는 추후 개별통지 예정)

다. 보상액 산정: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라. 보상방법 및 절차

- 1) 협의취득 시 전액 현금 지급하며,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개별 통지합니다.

※ 절차: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 감정평가 ⇒ 보상금 결정⇒보상협의(보상금 지급)

- 2) 협의불성립의 경우: 수용재결 ⇒ 공탁 ⇒ 수용

7. 감정평가업자 추천

- 가. 울산광역시장과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나.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 면적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

토지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자 확인	전화번호 (주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가.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등에 의하여 잔여지 매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 위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송달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 라.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마.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여건개선과 재산사학팀 (☎ 052-210-596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4. 8. 20.

울산광역시교육감

